

삼육대학교 학칙 개정(안) 공고

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.12. 15.(금)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사유

- 1)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
- 2)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(안)에 따른 적용[학생 학습권 보호 - 예비군 참여]

2. 주요 개정 내용

- 1) 학칙 제32조(유급) ②③항 수정
- 2) 학칙 제37조(교과 이수단위) 내용수정
- 3) 학칙 시행세칙 제2장 제4조(입학, 편입학, 재입학 허가) ①항 수정
- 4) 학칙 시행세칙 제3장 제2조(학점취득) ⑤항 신설
- 5)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1조(일반요건) ⑥항 수정
- 6)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제1조(결석조치) ⑩항 신설
- 7) 학칙 시행세칙 제15장 제1조 4 수정
- 8) 학칙 시행세칙 제18장 제1조(등록금 반환) 3목 수정

3. 개정(안):

- 학칙 -

현행	개정	비고
<p>제32조(유급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유급은 매 <u>학년말</u>에 시행하며, 1학기 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</p> <p>③ 유급된 학생은 <u>성적 부진에 의한 재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</u> 1,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,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채플과 교양과목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,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,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.</p> <p>④~⑤ 생략</p>	<p>제32조(학점인정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유급은 매 <u>학년도말</u>에 시행하며, 1학기 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할 수 있으나 휴학기간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</p> <p>③ 유급된 학생은 1,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,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채플과 교양과목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,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간호학과 15학점, 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.</p> <p>④~⑤ 생략</p>	<p>제32조</p> <p>②항 내용수정</p> <p>③항 내용 부분삭제</p>
<p>제37조(교과 이수단위)</p> <p>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학점은 <u>1학기 간</u>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, 실험 및 실습, 실기,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<u>1학기 간</u>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</p>	<p>제37조(교과 이수단위)</p> <p>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학점은 <u>매학기</u>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, 실험 및 실습, 실기, <u>현장실습(인턴십)</u> 등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<u>매학기</u>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</p>	<p>제37조</p> <p>내용 수정</p>
<p>제44조(전공이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(컴퓨터공학부 85학점, 인공지능융합학부 85학점)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.</p>	<p>제44조(전공이수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단일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해당 전공과목 75학점(<u>미래융합대학 85학점, 건축학과(5년) 121학점, 약학과(4년) 161학점, 약학과(6년) 201학점</u>)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수한 전공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.</p>	<p>제44조</p> <p>내용 수정</p>
<p>제56조(졸업)</p> <p>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. 복수전공(부전공, 교직,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),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, 융합(공유)전공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. (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).</p>	<p>제56조(졸업)</p> <p>① 이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. 복수전공(부전공, 교직,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), 연계전공 및 자기설계전공, 융합(공유)전공, <u>마이크로전공</u>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. (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 표 참조).</p>	<p>제56조</p> <p>내용 수정</p>

- 학칙 시행세칙 -

현행	개정	비고
<p>시행세칙 제2장 입학, 편입학, 재입학 제4조(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)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,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단,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② 생략</p>	<p>시행세칙 제2장 입학, 편입학, 재입학 제4조(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 허가)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, 편입학과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단, 편입학의 경우 우리 대학의 재적생은 허가하지 아니하며, 제적생은 타대학에서 편입학 수료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편입학 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 ①항 수정</p>
<p>시행세칙 제3장 제2조(학점 취득) ①~④ 생략</p>	<p>⑤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	<p>⑤항 신설</p>
<p>시행세칙 제7장 졸업요건 제1조(일반요건) ①~⑤ 생략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(중증), 청각장애인(중증), 지적 장애인,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장애 중증 학생은 「사회봉사-교필」과목이 면제된다.</p>	<p>시행세칙 제2장 졸업요건 제1조(일반요건) ①~⑤ 생략 ⑥ 교양필수과목 중 cyber로 진행되는 과목은 시각장애인(중증), 청각장애인(중증), 지적 장애인, 외국인 유학생에 한하여 다른 교양선택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장애 중증 학생은 교양필수 지역사회공헌 및 그린교육(노작교육) 과목이 면제된다.</p>	<p>제1조 ⑥ 내용수정</p>
<p>시행세칙 제10장 제1조(결석조치) ①~⑩ 생략</p>	<p>시행세칙 제10장 제1조(결석조치)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을 인정하며,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습권(보강 또는 온라인강의 제공 등)을 보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 ⑩항 신설 제출서류 - 동원훈련 확인서</p>
<p>시행세칙 제15장 제증명서 발급 제1조(증명서의 종류) 1~3 생략 4. 졸업예정증명서: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4학점(약학과 4년제 142학점, 약학과 6년제 219학점, 건축학과 5년제 143학점)이상인 자(단,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.)</p>	<p>시행세칙 제15장 제증명서 발급 제1조(증명서의 종류) 1~3 생략 4. 졸업예정증명서: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8학기(건축학과 5년제 10학기, 약학과 6년제 12학기) 등록을 필하고 취득학점이 113학점(약학과 4년제 142학점, 약학과 6년제 219학점, 건축학과 5년제 143학점)이상인 자(단, 조기졸업신청자는 예외로 한다.)</p>	<p>제1조 4. 내용수정</p>
<p>시행세칙 제18장 등록금 반환 및 체납 제1조(등록금 반환 - 학칙 제29조) ② 반환 기준 1~2 생략 3.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</p>	<p>시행세칙 제18장 등록금 반환 및 체납 제1조(등록금 반환 - 학칙 제29조) ② 반환 기준 1~2 생략 3. 군휴학자는 당해 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 단, 입학(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) 후 첫 학기 등록금은 이월하여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처리한다.</p>	<p>제1조 3. 내용수정</p>

4.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: 붙임

5. 회신

- ① 회신기한: 2023.12.15.(금)
- ② 회신방법: e-mail(prof_data@syu.ac.kr)
- ③ 문의: 교무처(02-3399-3150)

2023. 12. 11

삼육대학교 총장